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준비를 위한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6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4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4. 0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4. 19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)

가. 개정이유

- 정책 환경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· 분류 체계의 개선 내용을 담은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되었으며('23. 5. 16. 공포 / '24. 5. 17. 시행) 연계된 법률이 동시 시행 예정임.

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문화재 용어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일괄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‘ 문화재’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
 - 1) ‘문화재’ → ‘국가유산’, ‘문화유산’ 등으로 용어 변경
(안 제3조 · 제5조 · 제6조 · 제7조 · 제8조 · 제9조 · 제11조 · 제13조)
 - 2) 인용된 법률명을 해당유산 관계 개별법률명으로 변경
(안 제1조 · 제2조 · 제5조 · 제10조 · 제12조)
- ‘문화재청(장)’을 ‘국가유산청(장)’으로 변경(안 제4조 ·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
-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: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
 - 특이사항 없음 [복지지원과-8519(2024. 2. 27.)]
-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366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2. 26. ~ 2024. 3. 18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 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「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등 13건 조례에 대하여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으로 ‘문화재’ 등의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변경, ‘문화재청장’을 ‘국가유산청장’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,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4. 1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